

전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45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4577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19가단185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국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빈

변론 종결2021. 11. 11.

판결 선고2022. 1. 13.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19가단1854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가 2014. 9. 24. 체결한 매매계약을 27,669,05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669,058원과 그 중 17,353,378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18. C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변제기 2015. 4. 22.), C는 변제기 이전부터 원고에게 약정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한 후 2015. 6. 2.을 기준으로 합계 17,617,696원(= 대출원금 17,353,378원 + 연체이자 264, 318원)의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고 있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6. 8.경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차3715호로 위 대출금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0. 'C는 원고에게 17,617,969원과 그 중 17,353,378원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9. 9.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5. 9. 9. C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지급명령은 같은 달 23.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 2019. 4. 3.을 기준으로 C가 원고에 부담하고 있는 위 판결원리금은 합계 27,669, 058원(= 원금 17,353,378원 + 10,315,680원)이었다.

다. C는 2011. 6. 29. 학교법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함)을 매수한 후 2011. 7. 22.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동시에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C는 2014. 9. 2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들을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0. 27.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그러던 중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2015. 3. 10.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F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5. 8. 21. 말소되었는데, 피고는 배당절차에서 72,632,651원을 배당잉여금으로 수령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4년 9월경 이 사건 부동산들은 C가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반면, C는 이미 원고 외에도 I은행 전주지점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던 상태였다.

1) 적극재산

1	이 사건 부동산들	285,917,900
2	C 대출금 채권	2,997,955
합계	288,915,855	

2) 소극재산

1	원고	17,353,378
2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69,000,000(1)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배당기일인 2015. 10. 12.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251,217,884원(원금 225,099,592원, 이자 26,118,292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4. 9. 2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와 피고 모두 이에 관하여 주장, 증명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I 은행 전주지점 대출금채무	89,577,595
4	피고 공사대금채무	104,445,000

1	원고	17,353,378
합계	380,375,97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복전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금융기관으로서 C의 재산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특히 2015년 4월부터 9월경까지 C가 거주하고 있던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제척기간인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인 2014. 9. 22.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무렵 신용보증기금이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5. 6. 8.경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C의 주소지를 이 사건 아파트로 기재하였고, 그 전후인 2015. 4. 9.부터 2015. 9. 9.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1.부터 2019. 4. 8.까지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에 더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채무자인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되고(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는 원고 외에도 I은행 전주지점 등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인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자신이 C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후 신용보증기금의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과정에서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관련 취득세 등을 납부함으로써 실제로는 23,650,979원만 변제받은 것에 불과한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가액과 동등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에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은 C가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반면, C는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던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특정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시 C가 피고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은 대물변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소외 J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이러한

선행행위로 인하여 C가 무자력이 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J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아닌 후행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14. 9. 22. 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2014. 9. 25.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C가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2014.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아파트 매도 당시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적극재산

1	이 사건 부동산들	285,917,900
2	이 사건 아파트	90,000,000
3	C 매출금 채권	2,997,955
합계	378,915,855	

2) 소극재산

1	원고	17,353,378
2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69,000,000
3	이 사건 아파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0,400,000
3	I 은행 전주지점 대출금채무	89,577,595
4	피고 공사대금채무	104,445,000
합계	430,775,973	

라.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이루어져 그 결과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²⁾을 공제한 잔액 116,917,900원(= 285,917,900원 - 169,000,000원)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인 27,699,058원을 초과한다는 점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27,699,058원을 초과한 배당잉여금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액인 27,699,05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27,699,058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7,353,378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이 상사채권임을 이유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연 6%를 구하나, 수익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가액배상의무는 본래 채권자인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인 C에 대해 부담하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대신하여 부담하게 되는 가액배상채무에 불과하여 상사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진웅

판사곽지영

별지

1)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배당기일인 2015. 10. 12.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251,217,884원(원금 225,099,592원, 이자 26,118,292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4. 9. 2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와 피고 모두 이에 관하여 주장, 증명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배당기일인 2015. 10. 12.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251,217,884원으로 채권최고액인 169,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